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3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별표 2)	9
2.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별표 4)	11
3. 주요 행정처분 기준 및 입찰참가제한 문구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절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절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¹⁾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²⁾에서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교육부령³⁾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⁴⁾에서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게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⁵⁾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학교급식법」 제16조⁶⁾에서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

-
- 1)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3) 【참고자료 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참조
 - 4)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5) 【참고자료 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관련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참조
 - 6)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 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

하여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축산물의 등급, 품질인증 등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령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⁷⁾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하여⁸⁾ 그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⁹⁾을 두고 있음.

한편,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¹⁰⁾는 2010년 국회 등으로부터 「식품

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7) 「학교급식법」 제23조(벌칙), 제24조(양벌규정) 및 제25조(과태료)

8)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 「학교급식법」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10) 2013. 3. 23.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개편되었음.

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요청받음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관계 법령”¹¹⁾이라 함)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수립¹²⁾하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식재료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¹³⁾ 만료일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제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음.¹⁴⁾

< 연도별 입찰참가자격 제한현황(eaT기준¹⁵⁾) >

(단위: 개,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식재료 납품업체 수(a) (해당연도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3,603	4,110	4,581	4,503	4,661	4,844	4,994	4,878	4,903	5,197
위 업체(a) 중 행정처분 받은 업체 수(a)	원산지표시법 위반	27	32	17	30	30	17	8	19	20	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5	89	107	158	160	173	59	59	119	50
	계	92	121	124	188	190	190	67	78	139	53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 비율(b/a)		2.6	2.9	2.7	4.2	4.1	3.9	1.3	1.6	2.8	1.0

주 1: 부정당업자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외

주 2: 나라장터(g2b)를 이용하는 일부 학교에서의 입찰참가제한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미포함

자료: 교육부

11) 교육부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식품관계 법령으로 정의·관리하고 있음.

12)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구 교육과학기술부, 2013. 3. 23.)

13) 영업정지, 품목 제조 정지, 과징금·과태료·벌금 확정 처분, 【참고자료 3】 참조

14) 【참고자료 3】 식재료 업체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 및 식재료 입찰참가제한 문구 참조

15) eaT는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시스템”으로 행안부 고시에서는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규정(당초에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부름)하고 있음. 2022년 12월 기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학교 10,712개교 중 87.8%에 해당하는 9,406개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¹⁶⁾에 따르면,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2조와 제43조¹⁷⁾ 및 각 시·도의 「회계규칙」¹⁸⁾에서 국·공립학교의 계약업무는 각각 학교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¹⁹⁾에서 입찰

16)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②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학생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8) 시·도마다 「도립학교 회계규칙」, 「시립학교 회계규칙」, 「공립학교 회계규칙」 등 시·도 회계규칙으로 공립학교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회계규칙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계약사무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1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추적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참가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각 제17조²⁰⁾에서 계약담당자는 해당 시행령,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입찰에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해당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²¹⁾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과 「학교급식법」에서는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관련 업체에게 학교 식재료 입찰참가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입찰업무가 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2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교육부는 2019년 7월 감사원(감사결과)에서 식품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학교급식 입찰참가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방안 강구를 통보받았음.

처리되고 있으며,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법령상 근거 없이 식재료 입찰참가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보호하려는 것으로 급식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교육부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개정안에서는 식재료 관련 법령에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만을 명시하였으나, ‘원산지 표시의무’와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추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입찰참가 제한 조치는 학교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입찰공고문을 통해 ‘단체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운영체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 5) 내용량
-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물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별표 4)

1. 시설관리

- 가.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나. 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인위생

-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 나. 손을 잘 씻어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 소독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3. 식재료 관리

- 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여부를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식재료 검수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작업위생

- 가.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나.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의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 다.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배식기구·용기등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또는 원재료 등과 접촉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라.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마.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 바. 날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충분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사.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75℃(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으로 가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아.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온도와 시간관리를 통하여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5. 배식 및 검식

- 가. 조리된 음식은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운반 및 배식기구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배식 중에 운반 및 배식기구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급식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한다.
- 마.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6. 세척 및 소독 등

가.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관계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소방·전기안전, 보일러·압력용기·덤웨이터(dumbwaiter) 검사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작동방법을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그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8.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위생·안전관련 기준에 따른다.

참고자료 3

주요 행정처분 기준 및 입찰참가제한 문구

○ 식재료 업체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

구분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유형	처분명	위반행위	영업제한 기간	위반행위
영업 제한	영업정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위반	‘처분기간’동안 영업금지	(처분규정 없음)
	품목제조정지	성분에 관한 규격 등 위반	‘처분기간’동안 위반품목 제조금지	(처분규정 없음)
벌과금 벌금	과징금	품목제조·영업정지 해당 행위	(과징금 납부로 같음)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위생교육 미이수 등	—	원산지 미표시 등
	벌금	법률에서 정한 특정 위반행위자	—	원산지 허위표시 등

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 허가 및 등록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시·도,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수행하는데, ‘벌금’ 처분의 경우 행정처분 기관의 고발을 거쳐 법원 판결로 그 처분이 확정됨.

자료: 교육부(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식품관계 법령 재구성)

○ 식재료 입찰참가제한 문구

입찰공고일	입찰참가 제한문구
2013.1.1.~ 2017.9.10.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17.9.11.~ 2024년 9월 현재	· 식품관련법령(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확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료: 교육부(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